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578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익산시 D 대 240㎡ 및 E 대 238㎡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F와 피고 사이에 2019. 12.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F에게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G 주식회사는 2010. 11. 17. H 주식회사에 2006. 1.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H는 2018. 10. 26.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7. 18. F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6. 'F는 원고에게 15,519,762원 및 그중 2,267,89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79969), 위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나. 또한, 주식회사 I은 2019. 7. 24. 원고에게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F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다음, 2020. 5. 8.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7. 'F는 원고에게 6,000,389원 및 그중 3,961,802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F의 부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12.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K, F, L, C가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1. 29.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익산시 D 대 240㎡ 및 E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2.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F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무자력인 F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가 거주하던 미등기 주택의 부지와 텃밭으로, 피고는 1967. 2. 25.경 망인과 혼인한 이후인 1968. 10. 20.경부터 망인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2019. 12. 4. 이후에도 홀로 위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F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은 199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모두 혼인과 동시에 출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부부가 한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생존한 부모의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부모가 위 주거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그 주거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식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취지에서 F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도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F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